

#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조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jinsim@aks.ac.kr

- I. 머리말
- II. 영조시대 이해의 쟁점: 정치사, 법제사의 시각에서
- III. 을해옥사의 전개: 역모 처단과 정치보복의 이중주
- IV. 을해옥사에 나타난 영조대 법과 정치
- V. 맺음말

## I. 머리말

18세기 영조시대 조선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면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이 시기 역사상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조선후기 그동안 쌓여왔던 부세제도의 모순,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증폭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집단 사이의 갈등이 정쟁의 형태로 야기되면서, 새로운 사회정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었다.<sup>1)</sup>

그런데 이 시기는 조선후기 사회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사회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던 시기였다. 주지하듯이 경종의 뒤를 이어 1724년 즉위한 영조는 제반 사회경제 변통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제도 전반의 정비를 꾀하였고, 국정운영의 쇄신에도 주력하였다.

그동안 이 시기 사회 여러 부면에 걸친 연구가 상당수 축적되었는데,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책 등이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영역, 즉 정치사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동 시기 정치사를 보는 연구자들 간에 완전히 합치된 결론에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특히 국왕인 영조에 주목하여 정치사를 바라보거나 왕권의 문제를 비교사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영조시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자 가운데 하나인 『천의소감(闡義昭鑑)』을 대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역사학·서지학·국어학 연구자들이 『천의소감』 자체와 함께 이 책 편찬의 정치·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 같은 작업은 이 시기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의 차원에서, 나아가 정치·문화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sup>2)</sup>

---

1)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정치사 관련 연구는 다양하다. 필자는 기존 연구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이태진,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 - 신분제와 향촌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일조각, 1992)와 박광용, 「朝鮮時代 政治史 研究의 成果와 課題」, 『朝鮮時代 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천의소감』은 영조가 1755년(영조 31)에 발생한 을해옥사(乙亥獄事)에 연루된 소론계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영조 왕위계승 과정과 영조 재위기간에 발생한 옥사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편찬한 책자이다.<sup>3)</sup> 을해옥사는 이해에 발생한 나주(羅州) 괘서사건(掛書事件)과 심정연(沈鼎衍) 시권사건(試券事件)을 통칭해서 부를 수 있다. 이 책자에는 을해옥사뿐 아니라 경종대 신임옥사(辛壬獄事), 영조 즉위 직후의 무신난(戊申亂) 등 굵직한 역모(逆謀)사건의 처리과정도 담고 있다.

이 글은 영조시대의 정치사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를 목표로 법에 주목하여 이 시기 정치사, 정치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천의소감』 편찬의 결정적 배경이 된 영조대의 대표적 정치범 처벌 사례인 을해옥사의 처리과정, 그 처벌의 양상을 통해 법과 정치, 권력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언급한다면, 종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는 당쟁사 내지 정치세력의 부침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왔다.<sup>4)</sup> 그러나 정치범 관련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역모 등 사건의 전개과정 분석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에게 가해진 처벌이 갖는 의미, 옥사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법운영의 특징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주지하듯이 당시 역모에 연루된 정치범에게는 능지처참, 참형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때로는 사형에서 감한 유배형이 내려졌다. 또한 중죄인의 가족들에게는 연좌제에 의해 처벌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당시 정치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실제 정치범 처벌에서의 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천의소감』에 나오는 영조대 주요 역모사건인 을해옥사를

- 
- 2) 2010년 9월 17일에 개최된 한중연 어문생활사연구소 학술회의 주제는 ‘『천의소감』과 영조시대의 정치·문화사’이며, 역사학·서지학·국어학 분야에서 모두 4명이 발표하였다.
  - 3) 『천의소감』은 모두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권4 부분이 1755년 2월부터 7월까지 이 책의 본문인 을해옥사를 다루고 있다. 『천의소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백철, 「영조대 國王義理明辯書의 편찬과 의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서울대 규장각, 2005) 381-383쪽 참고.
  - 4) 영조대 정치사와 관련한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었으나, 개별 연구 성과를 세밀히 검토하는 일은 별고를 요하는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개괄적인 정리에 그쳤음을 밝혀둔다.

중심으로 관련 정치범에 대한 법적용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형벌의 의미와 효과 등을 밝힘으로써 영조대 사법행정, 법과 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당과 간의 이해 대립에 주로 주목한 기존 정치사 연구의 진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선후기 정치권력, 왕권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시사를 던져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당시 정치사건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분석·검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 쟁점을 소개하고 이 시기 정치사, 왕권과 법을 보는 시각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적 접근이며, 향후 구체적인 논증을 따로 거쳐야 할 설명도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 II. 영조시대 이해의 쟁점: 정치사, 법제사의 시각에서

### 1. 조선후기 정치사와 영조시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영조시대는 조선후기 사회 전반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으며, 이는 정치 지형, 정국운영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었다. 영조대 법과 정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영조시대를 보는 시각과 쟁점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조선후기 및 영조시대 정치사 연구 현황부터 개관해보기로 한다.

이제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해방 이후 조선후기 정치사의 제일 과제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 이후 형성된 조선 정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조선왕조가 당쟁(黨爭) 때문에 망했다는 당쟁사관의 극복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붕당정치론(朋黨政治論)은 조선시대 정치를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당파성의 산물이 아니라, 붕당 간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사림(士林) 정치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5)</sup>

5)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을 시도한 주요 성과는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법조사, 1985); 근대사연구회,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상)-정치·사상편』(한울, 1987); 이성무·정만조 외,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한국정

대략 정치사 인식의 새로운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20여 년에 걸쳐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세력, 정국운영, 정치체도와 이념,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정치사의 흐름과 단계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즉, 조선후기 정치사의 전개과정은 시기에 따라 크게 봉당정치(朋黨政治, 17세기)-탕평정치(蕩平政治, 18세기)-세도정치(勢道政治, 19세기)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덧붙여 봉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숙종대의 여러 차례 있었던 '환국(換局)'이 설정되는 등 정치적 사건과 정치운영 양상을 일관된 흐름과 체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봉당정치, 탕평정치의 개념과 전개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16세기 사림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성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림은 이전의 훈구세력에 대항하여 성장한 정치세력으로, 이들은 정치적·사상적·학문적 입장 차이에 기초하여 여러 봉당(朋黨)으로 분열하게 되었다. 대략 선조대부터 공인되어오던 봉당정치 운영은 17세기까지 유지되었고, 이 기간 동안 상호 비판하되 공존하는 봉당정치의 이상을 실천하였다.

둘째,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봉당 간의 대립·정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봉당 간의 공존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건이 환국이다. 이 같은 봉당정치 운영의 변화의 원인으로는 경제변동에 있었으며, 정치에서 경제적 이권이 앞세워지면서 주자학(朱子學)의 군자·소인론에 입각한 종래 봉당정치의 이상이 퇴색하고, 봉당 간 정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셋째, 숙종대 환국을 통해 일당 전제(專制)가 반복되고 동시에 반대 봉당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이 전개되면서 봉당정치가 파국을 맞게 되었다. 경종, 영조의 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각 정치세력이 군주를 선택하는 이른바 '택군(擇君)'의 상황이 초래되었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조선왕조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

신문화연구원, 1992)를 들 수 있다.

6) 이하의 논의는 이태진,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법조사, 1985);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4);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지식산업사, 1997) 등 참고.

넷째, 이 같은 상황에서 18세기 추진된 것이 탕평정치이다. 즉, 영조, 정조는 자신들만의 당론(黨論)을 일삼는 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왕정체제의 강화를 통해 탕평(蕩平)을 시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들 국왕은 새로운 경제변동이 야기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권의 강화를 추진하여, 제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연구사에서는 붕당정치가 신권 위주의 정국운영이었던 것에 비해, 탕평정치는 국왕이 신하들을 관료로 통제하며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정치형태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관점 속에서 우리의 관심인 영조시대는 탕평정치의 시대로 자리매김되는데,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살펴볼 때 이같이 파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조가 즉위한 18세기 전반 국정의 현안은 격화된 당쟁을 억제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양역(良役) 변통을 비롯한 부세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탕평정치와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은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조는 스스로 '탕평(蕩平)'과 '균역(均役)'을 자신이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7)</sup>

노론의 지원에 의해 집권한 영조는 당쟁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였다. 소론과 남인의 지원을 받은 정종이 왕위에 오른 후 대대적인 노론세력에 대한 숙청이 있었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왕권의 정통성을 둘러싼 소론, 남인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조정 내 권력집단, 붕당세력의 득세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영조가 즉위한 후에 효과적인 정국운영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바로 탕평이었다.

숙종대부터 탕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탕평이 본격적으로 정국 운영의 논리로 자리 잡은 것은 영조대였다. 이전 숙종대에는 왕권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환국을 통해 왕권 강화를 추진한 데 비해 영조는 탕평을 통해 왕권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운영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상 탕평의 기원에 대한 연구<sup>8)</sup>, 영조대 시기별 탕평의 추이에 대한 서술<sup>9)</sup>, 영조·정조대 탕평정치의 특징<sup>10)</sup> 등 다양한

7) 『英祖實錄』 51년(1775) 10월 甲申.

8) 정경희, 「숙종대 탕평론과 '탕평'의 시도」, 『한국사론』 30(서울대 국사학과, 1993)

9)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과의 활동」, 『진단학보』 56(진단학회, 1983);

연구가 진행되어, 영조대 정치운영 양상의 대략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조대를 포함한 조선후기 정치사 이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나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근본적으로 ‘붕당’, ‘붕당정치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 부정적 관점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즉, 때로 정치적 희생이 동반된 당시의 당쟁, 격렬한 정쟁을 사람들 간의 불가피한 정책 대결의 과정으로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다음, 왕권과 신권의 이분법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다수 연구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왕권과 신권을 상호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붕당정치기의 신권 우위에서 탕평정치기의 왕권 우위로의 변화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도식적 틀에 갇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래 붕당정치론에서 군신공치(君臣共治)를 신하들의 군주제약 원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어느 일방의 제약 차원이 아니라 상호 의존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정청할 만하다.<sup>11)</sup>

또한 영조·정조 시대의 경우 대개 정국 동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탕평’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연구의 중심이 되다 보니, 국왕을 중심에 둔 논의나 분석이 미흡하였다.<sup>12)</sup> 특히 무엇보다도 군주권, 국가론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약점이다.

물론 이태진 교수에 의해 정조를 서양의 절대군주와 비교하여 유교적 계몽절대군주로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sup>13)</sup>, 시론적인 글이지만 심재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역사학보』 111(역사학회, 1986); 김성운,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역사와 경계』 43(2002).

10) 영조·정조대 정치 상황과 탕평정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4) 참고.

11)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9), 7쪽.

12) 기존 연구에서는 영조대 정국변화를 추적하여 국왕 영조가 어떻게 완론·준론 탕평, 소론·노론 탕평 등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는 있으나, 영조의 왕권 자체를 조선 전후 시기, 혹은 다른 나라의 군주와 세밀하게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13) 이태진, 「정조의 《大學》 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李晦齋의 사상과 그 세계』(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이태진, 「정조 - 유교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3(일조각, 1993)

우가 이태진의 선행 연구에 자극을 받아 서양사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18세기 각종 혹형(酷刑)·악형(惡刑)의 금지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움직임을 통해 국왕의 위상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sup>14)</sup> 아울러 김백철에 의해 영조대 사회변동상을 『속대전』을 토대로 통합적으로 추적하여 영조의 군주상을 큰 틀에서 재해석한 연구가 있지만<sup>15)</sup> 여전히 탕평군주의 위상을 동서양 각국의 군주들과 본격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상의 정리를 통해 영조시대, 더 나아가 조선후기의 정치사에 대한 재해석, 이론적 논의는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 2. 영조대 법제 정비의 성격

앞서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와 관련한 기존 시각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영조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필자는 국왕 영조가 주도하여 이 시기에 활발히 추진된 법전(法典) 편찬 및 형정(刑政) 정비의 내용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정치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시기 편찬된 『속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영조의 정치사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영조 정치사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영조는 중국 삼대(三代)의 이상정치인 요순정치(堯舜政治)를 추구하였고,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 확립을 추구하기 위해 경서 가운데 『주례(周禮)』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자신이 본받을 대상으로 조종(祖宗)을 설정하였다. 조종(祖宗)의 구체적인 성군으로 세종(世宗)을 지목하고 세종대의 정치를 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sup>16)</sup>

아울러 백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군주의 백성관도 단순한 유교적

14) 심재우,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규장각』 22(서울대 규장각, 1999); 심재우, 「조선후기 형벌제도의 변화와 국가권력」, 『국사관논총』 102(국사편찬위원회, 2003)

15)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2010)

16)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周禮》」, 『한국사론』 51(서울대 국사학과, 2005).

애민관을 넘어 백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새로운 국가상(國家像)을 마련하는 데 이르렀다.<sup>17)</sup> 영조가 ‘민국(民國) 정치이념을 국가상으로 마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영조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에 집중하였고, 영조의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은 국가제도 전반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는 세종대 문물을 준거로 삼아 법고창신(法古創新)하는 일대 문화정책을 표방하였고, 재임기간 내내 대대적인 법제 정비사업을 수행하였다.

영조는 법제도 개혁과 함께 자신의 위민의식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였는데, 그것이 『속대전(續大典)』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다.<sup>18)</sup>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확인된 법제 정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속대전』에는 다양한 절차법규의 정비가 확인된다. 특히 『속대전』에는 형사 절차법규의 정비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형전(刑典)에 새로운 편목(篇目)이 대폭 수록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각종 인신 구속에 대한 제한과 죄수에 대한 처우 개선 조치의 명문화, 처벌 규정의 정비 등은 『속대전』 형전에 수록된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 영조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조치 중 주목할 것으로 대부분의 악형(惡刑)이 사실상 이때 모두 금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세종대에도 태배형(笞背刑)의 금지(1430)와 의비월족(劓鼻刖足)의 금지(1444) 등 이른바 육형(肉刑)의 폐지 조치가 일부 확인되지만, 영조는 조선후기 추국(推鞠) 등의 과정에서 종종 행해지던 가혹한 고문·악형을 순차적으로 결국 모두 금지시켰다.

영조가 금지시킨 가혹한 고문과 법외적인 혹형으로는 압슬형(壓膝刑, 영조 즉위년), 국수좌추(鞫囚左柱, 영조 5년), 포도청 전도주리형(剪刀周牢刑, 영조 8년), 낙형(烙刑, 영조 9년), 수령의 원장(圓杖) 사용(영조 10년), 자자형(刺字刑, 영조 16년), 주장당문(朱杖撞問, 영조 35년), 대가형추(帶枷刑推, 영조 40년), 난장형(亂杖刑, 영조 46년) 등을 꼽을 수 있다.

17)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백성관의 변화와 ‘민국」, 『한국사연구』 138(한국사연구회, 2007).

18) 이에 대해서는 김백철, 앞의 책(2010); 심재우, 「조선후기 법전 편찬과 국왕의 법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VIII(한국국학진흥원, 2008) 참고.

이 밖에도 고문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점도 들 수 있다. 모든 고문을 궁극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고문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무제한적 고문 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이상의 내용은 조선의 형사사법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는 것으로서 그 개혁적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한 영조의 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법치(法治)’의 지향점을 간단히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 영조는 『속대전』의 편찬을 통해 유교적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충실히 채우고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김백철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유의미한 결론이다.<sup>19)</sup>

그런데 영조시대의 법제 정비를 보는 이 같은 관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앞서 소개한 이 시기 행정 정비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연구는 정치 영역에서 왕권을 기반으로 제반 법규와 정책을 추진하는 탕평군주(蕩平君主)로서의 영조의 위상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영조의 행정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조윤선, 김우철이 영조대의 정치범 심리 및 처벌기록인 『추안급국안』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먼저 조윤선의 견해부터 살펴보자. 조윤선은 영조대 역모사건의 처리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탕평군주 영조의 개혁정치, 특히 형벌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였다.<sup>20)</sup> 그의 연구는 영조시대 정치사건의 형사재판 절차 및 고문, 처벌 등 행정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치·사회 개혁의 중심으로 인식되던 국왕 영조의 ‘탕평군주’로서의 기존 역사상이 과장되었음을 함의,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우철도 방대한 분량의 『추안급국안』을 분석하여 자료의 형식에 나타나는 조선후기 추국(推鞠) 절차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관심인 영조대의 경우 조율(照律)의 생략, 결안(結案)의 생략 등 정치범을 심문하는 데 권위적·비이성적 추국이 진행된 것으로

19) 김백철, 앞의 책(2010).

20) 조윤선,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조선시대사학회, 2009).

파악하고 있다. 즉, 추국의 일반적인 절차는 ‘심문-진술-형신-자백-결안-조율-처형’으로 나뉘는데, 영조·정조대로 가면서 추국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1)</sup>

이 두 연구자의 연구는 정치범에 대한 처벌, 처리에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었다고 보기 힘든 점들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영조의 법제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조운선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자.

『속대전』에 나타난 영조의 법제 개혁 내용은 과장되었으며, 이는 을해옥사의 처리과정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즉, 영조대 정치범 처벌 과정을 살펴볼 때 무자비한 정치보복, 범의 남용, 자의적인 사법제 운영 등을 들어 개혁군주로서의 국왕 영조에 대한 기존 역사상이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한다.<sup>22)</sup>

그가 논문에서 열거한 비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악형 폐지 조치 등을 형벌제도를 개선하려는 영조의 일관된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고, 영조의 ‘관형(寬刑)’의 흠용(欻恤) 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은 당대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법조문 중심의 단순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다음, 을해옥사 등 정치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해진 형벌 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영조의 형정운영이 정치범에 대한 자의적인 남형, 법 원칙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위기간 중 일부 가혹한 고문·혹형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을해옥사 처리 과정에서의 영조의 정치범 처벌 양상은 가혹한 전제군주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영조의 형벌 개혁을 높게 평가하기 곤란한 이유들, 혹은 영조의 자의적인 법집행 증거로 주요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모사건에 대한 추국 때 고신(拷訊)을 하루에 두 번 이하로 제한했으나, 고신 차수 제한이 없고 포도청·추국청을 오가며 신문하는 구조에서 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21)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한국고전번역원, 2010).

22) 조운선, 앞의 논문(2009).

둘째, 신하들의 만류로 정지시킨 낙형(烙刑)을 무신난 등 영조 초반 정치적 사건에서 영조가 직접 시행을 명하고는 뒤늦게 영조 9년에 와서야 금지시켰다.

셋째, 영조가 추국할 때 압של, 낙형을 금지시킨 조치의 수혜자는 양반 정치범일 뿐이며, 포도청의 난장(亂杖), 주리(周牢)는 영조 말년까지 남아 있어 일반인들은 가혹한 고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넷째, 영조가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을 없앴지만, 전가사변율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죽은 형벌이었기 때문에 폐지 조치를 높게 평가하기 곤란하다.

다섯째, 영조는 흘형(恤刑)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서 역모 등 정치적 사건에서는 반대과를 잔혹하게 제거하였다.

여섯째, 특히 을해옥사 처리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죄인의 자백을 받지 않고 단지 전지(傳旨)만으로 처형하는 형벌 적용의 무원칙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옥사를 빌미로 무신난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대역률(大逆律)을 추시(追施)하고 자손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남발하여, 무신난 이후 수백 명이나 되는 정적 제거라는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상 그의 주장은 영조대 주요 모반사건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sup>23)</sup> 즉, 그의 주장은 법전과 『영조실록』 이외에 영조대 핵심 정치사건이 압축되어 있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이 시기 정치범들의 처벌과정과 내용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지적이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을해옥사는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반노론, 반영조의 편에 선 소론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자 정치정보복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역모사건과 그 처리를 둘러싼 형정(刑政)을 포함한 영조대 법제 정비의 내용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

23) 조윤선은 『추안급국안』을 활용하여 영조대 역모사건의 전개 양상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성과로는 조윤선, 「영조 6년(경술년) 모반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2(2007); 조윤선,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패서사건의 정치적, 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2008); 조윤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37(2009)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영조시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한 여러 논쟁점을 정치사 영역, 법제사 영역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관해보았다. 이를 통해 아직 영조시대 역사상이 충분히 합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왕 영조를 탕평군주로 인식하더라도, 탕평군주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영조의 탕평정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역모 등 정치사건 처리를 둘러싼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사를 종합해볼 때 영조의 탕평추진, 법제 개혁에 담긴 위민사상이 새로운 국정 운영방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모와 변란 등 정치사건 영역에서는 민생 문제에서 보였던 영조의 개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필자는 영조시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만, 영조대 정치사·법제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지적을 의식하면서 이하에서는 이 시기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을해옥사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정쟁의 수습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왕권과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가능한 선에서 피력해보고자 한다.

### III. 을해옥사의 전개: 역모 처단과 정치보복의 이중주

이상 영조시대를 보는 여러 시각과 논쟁점 등을 전제로 하여 이제부터는 영조의 탕평군주상(蕩平君主像)을 재점검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을해옥사(乙亥獄事)에 주목하여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조의 국정 후반기인 1755년 발생한 을해옥사는 정치사에서도 영조 탕평에서 큰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정치범에 대한 사법 행정의 작동 방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을해옥사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변란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영조의 탕평군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영조대 탕평군주상과 왕권(王權), 그리고 정치와 법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고, 영조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바로 을해옥사이다.

을해옥사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영조대 국정 현안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 국왕 영조에게 던져진 당면 현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sup>24)</sup>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왕위의 정통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영조의 왕위 정통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중의 하나가 그의 출신 문제였고, 또 하나가 노론과의 결탁, 즉 노론(老論)세력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는 부담이었다.

영조는 왕의 승은(承恩)을 입은 후궁(後宮)인 숙빈 최씨(淑嬪崔氏) 소생이었다. 적장자(嫡長子)가 적통을 잇는 조선시대 정상적인 왕위계승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영조에게 늘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한 왕위 즉위과정에서의 노론세력과의 결탁 혐의는 사실상 노론에 의해 영조가 경종대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독살 의혹에서 그가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두 번째는 민생(民生)과 부세(賦稅) 등 제반 사회 문제의 해결이었다. 이 시기 사회경제 등 여러 부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부세제도의 모순, 재정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무신난(戊申亂)을 비롯한 수차례의 역모, 변란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다수의 소론, 남인 관리들을 제거하고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의리명분을 확립하였다. 특히 이하에서 살펴볼 을해옥사 발생의 배경에는 무신난이 있었다.<sup>25)</sup> 무신난은 이인좌 등 소론의 과격파들이 일부 남인들과 합세하여 일으킨 변란으로,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며 경종의 죽음에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자 한 사건이었다.

영조는 무신난 등을 진압하면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였고, 영조 치세 중반기에 이르면 탕평정치의 틀이 공고해지고, 국법체계의 정비와 사회경제 정책의 수립을 통해 앞서 제기된 현안이 거의 해결되기에 이르렀다.<sup>26)</sup>

24) 이에 대해서는 정만조, 앞의 논문 참고.

25) 『開義昭鑑』 권3, 1728년 1월 기사에서는 이인좌 등의 擧兵 및 治罪에 관한 전말이 실려 있다. 무신난과 을해옥사는 반영조, 반노론 정치변란이라는 점, 을해옥사 발생 후 무신난에서 처벌을 면한 자들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건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26) 영조 탕평정치하의 제반 사회경제 개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박광용, 앞의 논문(1994); 김백철, 앞의 책(2010)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1755년 을해옥사는 영조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 선택을 안겼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정국을 안정시켰다고 판단하던 이 무렵에 역모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하에서 후술하겠지만 을해옥사는 영조 집권 중반기에 이르기까지 반영조 소론 지식인들이 여전히 권력에 반기를 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한 영조는 지금까지의 옥사 처리 기조와는 다르게 아래에서 보듯이 을해옥사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다수의 관리, 지식인들을 가차 없이 처단하기에 이르렀다.

을해옥사는 어떤 사건인가? 을해옥사의 전개와 관련자 처벌 과정은 영조 31년 실록을 일차별로 정리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사 이전의 정국 동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을해옥사 자체에 집중하여 그 내용과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sup>27)</sup>

『친의소감』 편찬의 결정적 계기가 된 1755년 을해옥사는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크게 두 사건을 말하는데, 이해 2월에 발생한 나주 께서사건과 바로 뒤를 이어 5월에 발생한 심정연 시권사건을 지칭한다.<sup>28)</sup>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정치적 변고에도 불구하고 탕평정치하에서 그동안 살아남았던 소론계 정치인들 대부분이 숙청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먼저 나주 께서사건부터 살펴보면 사건의 시작은 단순하였다. 즉,

27) 을해옥사를 전후한 시기의 정국 동향과 영조의 정치운영에 대해서는 한중연 어문생활사연구소 2010년 학술회의의 김백철 교수의 발표문과 이경구,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53(한국역사연구회, 2004)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을해옥사의 전개 양상에 관해서는 그간 연구자들에 의해 대략적인 전모가 밝혀졌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배혜숙, 「영조 연간의 나주 께서사건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1984); 이상배, 「제3장 영조의 탕평책과 노론정책의 확립」, 『조선 후기 정치와 께서』(국학자료원, 1999); 조윤선, 「조선 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37(2009)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 성과와 『영조실록』을 주로 참조하여 을해옥사의 전개과정을 서술하였고,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28) 『開義昭鑑』 권4에서는 2월에서 7월에 걸쳐 사건 처리 과정이 서술되어 있으나, 특히 2월과 5월의 기사가 많다. 한편 을해옥사는 편의상 나주 께서사건과 심정연 시권사건 2개로 나뉘지만, 사건 전개 과정은 사실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을해옥사는 사건을 일단락 짓고 告廟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김백철에 의하면 1) 영조 31년 2월 4일-3월 5일, 2) 3월 7일-4월 13일, 3) 5월 2일-5월 13일, 4) 5월 16일-8월 1일이다(김백철, 앞의 발표문, 12쪽 참고).

전라도 나주의 객사 망화루(望華樓)에서 익명서(匿名書), 즉 괘서(掛書)가 걸린 사실이 조정에 알려진 시점은 1755년 2월 4일 전라감사의 보고에 의해서였다.<sup>29)</sup> 괘서에는 ‘조정에 간신이 가득 차서 민이 도탄에 빠졌다’는 등의 말을 비롯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 괘서사건이 경종대 노론계 정적들을 제거했던 신임옥사(辛壬獄事), 그리고 영조 즉위 이후 일어난 무신난(戊申亂)에 연루된 소론계가 사건의 주동자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좌우 포도대장을 동원하여 괘서의 주도자를 색출, 체포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주모자로 체포된 자는 전라도 나주에 유배되어 있던 전지평(前持平) 윤지(尹志)였다. 그는 경종대 노론 탄압에 앞장섰던 소론 김일경(金一鏡)의 당인(黨人)으로 지목되어 영조 즉위 직후 처형된 윤취상(尹就商)의 아들이었다. 당시 윤지 역시 김일경과 함께 소론의 대표적 인물인 목호룡(睦虎龍)의 심복으로 음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주도를 거쳐 나주에서 오랜 유배생활을 해온 인물이었다.

사건이 조정에 보고된 지 7일 만에 체포된 윤지는 영조의 친국(親鞫) 등 조사과정에서 그가 이번 괘서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윤지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국문과정에서 이 사건은 대규모 역모사건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가혹한 심문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 사실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일단 심문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30)</sup>

첫째, 괘서 자체는 윤지가 작성하였고, 괘서를 객사에 내거는 데 행동으로 옮긴 인물은 그의 노(奴)와 처남이 연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괘서사건이 단순한 정부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종의 거병 전 단계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윤지는 일찍부터 정변을 위해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고자 시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아들 윤광철(尹光哲)을 통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필묵계(筆墨契)였다. 이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상부상조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비밀결사로서 윤지는 계를 통해 동조자를

29) 『영조실록』 31년(1755) 2월 戊申.

30) 나주 괘서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자백 없이 물고되거나 가혹하게 처형된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역모가 아닌 단순 괘서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물론 사건에 휘말려 무고하게 처형된 자들이 다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건 자체는 아래에 제시한 사례들을 볼 때 역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규합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거사를 계획하였다.

셋째, 그의 거사 계획에 참여한 인물들은 계와 학연으로 연결되었던 나주 지역의 아전을 비롯하여 윤지의 집안과 교유하던 유배인, 친분이 있던 자들이었고, 나주 이외에 서울 및 충청도 지역에서도 거사 동조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노론들이 이 사건을 소론계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패서사건은 단순한 일개인의 정부 비방 투서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역모에 대한 토벌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건의 주모자 윤지는 친국과정에서 자백을 하지 않고 며칠 만에 물고(物故)되기에 이르렀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윤지와 친분관계에 있던 나주 지역의 관리와 아전들, 같은 처지에 있던 유배인들, 윤지에게 학문을 배웠던 자들, 편지를 주고받던 서울의 소론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체포되어 줄줄이 문초를 겪고 상당수가 고문을 못 이기고 죽거나 처형당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40일간에 걸쳐 조정과 포도청 등에서 60여 명이 가혹한 심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죽은 자가 41명, 유배에 처해진 자가 20명, 관직을 추탈당한 자가 2명, 기타 2명 등 모두 65명이 화를 입었다고 전한다.<sup>31)</sup> 영조 재위기간에 모두 15차례의 패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나주 패서사건은 단일 패서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이 살상된 사건으로 기록된 셈이다.

다음은 심정연 시권사건이다. 이 사건은 나주 패서사건 이후 반영조·반노론의 입장을 지니고 있던 소론계 관료, 가문의 사실상의 궤멸을 가져온 사건으로서, 나주 패서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다. 사건의 발단은 나주 패서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755년 5월 2일 영조 참석하에 궐내에서 특별과거시험인 토역경과(討逆慶科)가 치러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영조와 조정을 비난하는 시험 답안지(試券)와 익명의 투서가 나오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sup>32)</sup>

조정인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는 시권과 투서의 주인공은 조사결과 바로 29세의 심정연(沈鼎衍)이었다. 그의 집안은 무신

31) 이상배, 앞의 책(1999), 142-146쪽.

32) 『영조실록』 31년(1755) 5월 乙亥.

난과 경술년 역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미 큰 화를 입었는데, 아버지 심수관(沈受觀)과 3형제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심정연의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역모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심정연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친국하는 과정에서 춘천지방을 중심으로 앞서 죽은 윤지(尹志)의 족인(族人)인 윤혜(尹惠)와 김일경의 후손들이 거병(擧兵)을 계획했다는 진술이 확보됨으로써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마침내 조정과 재야에 그나마 남아 있던 소론세력들이 대거 숙청되기에 이르렀다.<sup>33)</sup>

이상 을해옥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는데, 사건 전개는 기본적으로 역모에 대한 처단과정과 다름없다. 그러나 동시에 앞서 조운선이 지적한 것처럼 무자비한 정치보복, 법적용의 남용 사례도 분명히 드러났다.

본 사건과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처리 양상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영조는 을해옥사에 연루된 자들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대역 죄인에 대한 처단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조는 나주 패서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친국과정에서 역모 혐의자의 자백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지(傳旨)를 내려 즉시 처형하는 초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그중 박찬신(朴纘新)이라는 인물이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시 남대문 밖에서 효시하도록 한 것이 그 한 예이다.<sup>34)</sup>

또한 심정연 시권사건에 연루된 윤혜를 심문하는 사례를 보면, 영조는 승례문의 누각에 직접 갑옷을 입고 참석하여 그 심문을 감독하였으며, 그가 대역부도의 죄를 시인하자 훈련대장을 시켜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효수하여 머리를 바치게 하고, 그의 머리를 대신 등 여러 신하에게 조리 돌리게 할 만큼 처단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sup>35)</sup>

33) 이상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은 자가 77명, 유배 32명 등 110명이 형을 당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상배, 앞의 책(1999), 176쪽. 한편 조운선은 『추안급국안』의 기록을 분석하여 앞서 언급한 나주 패서사건, 그리고 심정연 시권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150여 명이 추국에서 심문을 받고 처형되거나 유배, 물고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조운선, 앞의 논문(2009), 226쪽. 이처럼 사건과 관련한 전체 처벌 규모는 연구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34) 『영조실록』 31년(1755) 3월 癸巳.

둘째, 역률(逆律)의 추시(追施), 즉 이미 지난 사건의 관련자들을 이때 와서 다시 역적으로 규정짓고 해당 가족들을 연좌시켜 처단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을해옥사 이전의 신임옥사, 무신난 때에는 관련자, 가족들을 광범위하게 연좌시켜 처벌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와서 수십 년 전 사건의 일족들을 역적으로 노적(學籍)한 것이다.

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영조가 을해옥사 이전에 관대하게 처리한 사건 관련 자손들의 역모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행보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률 추시와 관련해서는 이해 5월 20일 김일경·목호룡·이인좌·정희량 등 이미 한참 전에 처형된 인물의 가족을 노적한 사례가 있으며<sup>36)</sup>, 이 같은 조치가 종친(宗親)에까지 미치는 등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을해옥사 때에는 역적 가문의 부녀자들까지 모두 포도청에 구금하여 고초를 겪게 하는 등과 같은 조치도 취해졌다. 이는 김상로(金尙魯)가 옥사를 주관할 때 시행한 것으로, 정조는 즉위 후에 이 같은 조치를 금지시켰다.<sup>37)</sup>

결국 을해옥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소론 정치인들은 박문수(朴文秀), 이종성(李宗城), 이철보(李喆輔) 등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그들 또한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였다.<sup>38)</sup>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역모 가담자뿐 아니라 연좌되어 물고된 자를 포함하면 모두 5백여 명 정도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sup>39)</sup> 한마디로 조정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 한 해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탕평정국하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소론 정치인과 집안의 전멸, 항복에 이끈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을해옥사 처리 과정을 현재적 관점에서 정리한다면 역모에 대한 가차 없는 처단이라는 왕조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넘어서서, 국왕과 노론 집권세력의 반대세력에 대한 법을 이용한 강한 정치보복의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영조 탕평정치의 한계를

35) 『영조실록』 31년(1755) 5월 己卯.

36) 『영조실록』 31년(1755) 3월 癸巳.

37) 『정조실록』 즉위년(1776) 4월 丁卯.

38) 『영조실록』 31년(1755) 3월 癸未.

39) 이에 대해서는 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국사편찬위원회, 1997), 62-63쪽 참고.

동시에 보여준다.

#### IV. 을해옥사에 나타난 영조대 법과 정치

영조시대는 제반 사회변동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물제도의 정비가 단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환국과 변란 등 정치사건도 적지 않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영조는 당쟁이 격화되면서 왕의 즉위를 신료들이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지형 속에서 즉위하였기 때문에, 왕권의 안정을 위한 정적 제거는 한동안 불가피하였다. 또한 자신의 즉위를 도운 노론 신료들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또다시 영조 후반기에 발생한 을해옥사는 이 시기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55년 을해옥사의 전개 및 그 처리과정은 우리에게 영조대의 가혹한 정치범 처벌 과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영조시대는 법제 정비 작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그러나 패서로 시작된 사건이 거대한 역모로 확대되어 관련된 정치범들이 가차 없이 처단되는 을해옥사의 전개 상황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시기의 사법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당시 활발히 추진된 법제 정비 작업의 성과가 제한적인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을해옥사의 처리과정은 조선시대 정치체제와 정치운영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을해옥사는 결과적으로 영조대에 발생한 역모 가운데서도 반노론 정치집단에 큰 정치적 유혈을 낳은 중대 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역모 처단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기화로 법을 이용한 소론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비단 정치사뿐 아니라 이 시기 정치범 처리, 법운영, 역모에 대한 왕의 대응과 왕권 등에 관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왕권, 법, 정치를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왕권이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온 것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즉, 왕권을 신권과 병렬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독립

변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시대에 왕은 정권에 반하는 정치세력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유교에서 왕은 천명(天命)을 받은 초월적 존재였으므로, 그 권한 또한 막강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후기에 수교(受敎)라는 실정법이 왕의 권한으로 발포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시대에 왕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왕조의 통치체제와 각종 법규를 모아놓은 대표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왕의 법집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왕의 권한이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왕권이라는 점을 의미한다.<sup>40)</sup>

물론 중국 명·청 시대의 막강한 황제 권력에 비해 조선의 국왕은 신료들로부터의 제도적·정치적 견제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sup>41)</sup> 그렇지만 조선의 왕은 왕조의 최고 권력자로서 입법을 비롯한 세속적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을해옥사 처리 과정은 탕평군주 영조가 왕권을 최대한 행사한 과정이자, 자신의 집권 후반기 안정적 정치운영을 위한 과감한 권력 행사 과정의 하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 시대 법의 성격, 시대적 한계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조선왕조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王政時代)이다. 이 시기 법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정치권력의 이해에 충실할 수밖에 없으며, 형법도 신분에 따라 차등이 두어진 신분형법(身分刑法)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여 영조대 역모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사회나 현대사회나 정치 영역의 경우 법치(法治)가 잘 투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에 왕권을 위협하는 역모는 일종의 비상사태를 의미하여, 그 처리가 정상적인 법절

40) 황제권에 대한 규정이 처음 명문화되는 것은 대한제국의 「大韓國國制」(1899년)이다. 그런데 대한제국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은 정반대이다. 조선시대 국왕은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인 데 반해, 대한제국 황제권은 법으로 그 위상과 권한을 명문화하였으므로 법규정으로부터 초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통권 54호 (역사비평사, 2001) 285쪽 참고.

41) 이성무, 「조선시대의 왕권」,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국학자료원, 1999).

차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을해옥사 처리 과정에서는 연좌제 등을 통해 대역죄인과 그 집안에 대한 대대적인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인데, 이처럼 역모, 모역사건에 대한 대처, 관련자 처벌 과정에서 적용되는 형정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왕조사회에서 역모 등 정치사건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동서양 전통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선에서 사용한 중요한 법원(法源) 가운데 하나인 『대명률(大明律)』에서 역모죄의 경우 ‘십악(十惡)’의 하나라고 하여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구체적으로 모반대역(謀反大逆), 모반(謀叛) 범죄의 경우 범죄자는 주범, 종범을 불문하고 처형하였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처첩, 부모, 자녀 등 3대에 걸쳐 비교적 넓은 범위의 연좌 처벌이 적용되었으며<sup>42)</sup>, 대대적인 사면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이들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적 사안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을해옥사에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해 충분한 혐의 확정을 거치지 않고 처형하고, 이미 지난 사건 관계자들까지 대역률로 추시하여 처벌한 것은 정치보복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위에 대한 도전 행위인 역모사건이 재위 30년이 넘는 시점에서까지 등장한 것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영조 재위 30여 년간의 역모에서는 을해옥사에 비해 나름대로 절제된 처리가 있었다. 신임옥사와 무신난 관련자들의 가족을 을해옥사 때 비로소 연좌하여 처벌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을해옥사 이전까지의 옥사에서 감정적으로 가족들을 연좌 처벌하지 않고 상당히 인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예컨대, 김일경(金一鏡)의 아들 김영해(金寧海)에 대해 신하들은 연좌시켜 처형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사형을 감하여 노비로 삼는 것으로 처벌을 마무리하고<sup>43)</sup>, 무신난의 역적 가족을 연좌 처형하는 과정에서도 대역죄인이라 하더라도 자백하지 않고 형장을 맞다가 죽은 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족들을 연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연좌

42)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謀反大逆」조 및 「謀叛」조 참고. 謀反大逆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새로운 특례규정도 일부 마련된다.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경인문화사, 2007). 하지만 역모 죄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는 처벌 원칙은 큰 변화가 없었다.

43) 『영조실록』 1년(1725) 12월 丙寅.

관련 법규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다.<sup>44)</sup>

또한 이인좌(李麟佐)의 경우도 이인좌의 출가한 자매는 연좌시켜 처벌하지 않았으며<sup>45)</sup>, 영조대 이후 중요 정치범들의 연좌 기록을 모아놓은 『연좌안(連坐案)』을 보면 이인좌의 4명의 아들 모두 처형시키지 않고 노비로 만드는 것에 그쳤다.<sup>46)</sup>

전체적으로 보면 영조의 역모에 대한 대처는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처벌이 가혹해졌다. 무신난 이전까지만 해도 신중했던 옥사 처리는 전국적인 변란인 무신난을 거치면서 변화를 보이다가, 을해옥사에 이르면서 관련자 처벌, 가족 연좌는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sup>47)</sup>

아무튼 을해옥사에서 나타난 이 시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영조의 가혹하리만큼 집요한 관련자 색출, 처벌과정은 영조 행정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취약했던 전후 시기 국왕에게서도 역모 처리 과정에서의 정적 제거는 단호했던 것이 기록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범 처벌이라는 사례에 함께 이 시기에 추진된 제반 정치, 재정, 사회정책 전반을 아울러 고려하여 영조대 법·정치 운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영조대 형벌 등 형사제도 관련 규정의 정비 작업이다.

영조가 일련의 국제 정비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가 『속대전』의 편찬으로 나타났음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속대전』의 「형전(刑典)」에는 『경국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폭적인 민·형사 절차법규의 정비가 확인된다. 사형(私刑) 금지, 공형벌권 강화 등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 조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즉, 영조시대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왕정체제의 개편이 여러 면에서 추진되었

44) 『영조실록』 5년(1729) 4월 己亥.

45) 『영조실록』 4년(1728) 5월 庚申.

46) 『連坐案』(장서각 도서번호, K2-3440) 3책, 李麟佐 緣坐 기록 참고. 기록에 의하면 이인좌의 나이 어린 네 아들은 中明, 仁明, 文明, 化明이며 모두 ‘爲奴’에 처해졌고, 나중에 큰 아들인 中明만이 1730년에 絞刑에 처해져 죽는다.

47) 무신난, 을해옥사를 거치면서 관용을 베풀었던 연좌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예컨대, 『連坐案』을 보면 앞서 살펴본 김일경의 아들로서 減死爲奴에 처해진 아들이 나중에 무신난 등을 거치면서 處斬 등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그 한 예인데, 김일경의 둘째 아들인 18세의 金寧海는 1728년 무신난을 거치면서 이해 3월 17일 ‘依律處斬’되었고, 이 밖에 다른 가족들도 이후 處絞 내지 物放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연좌안』 제3책 金一鏡 緣坐 기록 참고).

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을해옥사의 관련자 처단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보복 행위, 무자비한 형정은 영조 탕평정치의 한계를 일정하게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왕권과 법의 테두리 속에서 국왕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여 민생 및 사회 정책을 추진한 제반 사실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치집단과 왕권의 문제, 법과 정치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을해옥사 처리와 관련하여 영조대 법과 정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기에 앞서, 왕권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의 필요성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정치세력, 정시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 분석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의 심화를 위해 정치가, 정치세력, 개별 사건에만 주목하지 말고 왕권·왕정의 성격에 대한 분석, 비교사적 고찰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학회에서는 동서양 근대이행기의 군주제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을 진행한 바 있는데<sup>48)</sup>, 18세기 영조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주변 나라의 군주권과 비교하는 방법론은 절실히 요구된다. 명·청 시기 중국의 경우 황제가 국가권력의 사권화(私權化)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황제권력을 행사하였다. 즉, 조선의 국왕에 비해 중국의 황제권은 훨씬 더 전제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황제 통치는 관료와 환관 두 부류의 뒷받침을 받아 그만큼 권력의 절대성 유지에 유리한 구조였는데, 조선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왕권, 군주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서양에서의 계몽군주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이다. 최근에 유럽의 경우 중앙집권화를 통해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절대군주, 계몽군주가 사실은

---

48) 분석대상은 한국의 고종, 중국의 광서제, 일본의 효명천황, 프랑스의 루이 14세, 러시아의 표트르대제, 오스만제국의 19세기 군주 등이다. 역사학회, 『근대 이행기의 군주제』, 역사학회 하계 심포지엄 발표문(2010.8.27.).

전통사회를 옹호하고 유지한 군주였다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sup>49)</sup> 이는 향후 영·정조 시대를 서양의 군주제와 비교, 분석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내용의 하나이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서 검토한 영조시대로 돌아와 보자. 영조시대는 조선에서 사회 제 부면의 다양한 변화가 본격화한 시기임에 분명하다. 본문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의 현황을 개관하고, 변화의 시기인 영조대 정치사, 정치권력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을해옥사의 양상과 그에 대한 처리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755년 발생한 을해옥사는 영조대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여타의 역모사건과 비교할 때 처리과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었다. 을해옥사는 이해 연속적으로 일어난 나주 궤사건과 심정연 시권사건을 말한다. 즉, 나주 객사에서 궤사가 발견된 것을 발단으로 시작된 궤사건은 거대한 역모로 발전하여 영조 중반기 수많은 소론계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가한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당시 을해옥사에 연루된 다수의 소론계 정치인들이 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숨을 거두었고, 이미 지나간 과거 사건의 인물들과 가족들까지도 역적률(逆賊律)이 소급 적용되어 처벌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조 전반기 노·소론 완론(緩論)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탕평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 부분 변질되었고, 노론 정치인들이 정국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조대 정치사 연구의 현황을 염두에 두고 을해옥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검토해보았다. 검토결과 무자비한 정치보복, 처벌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을해옥사는 영조시대 탕평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역모와 변란 등 정치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영조의 조치들은 그가 탕평을 추진하며, 법제 개혁 등에서 보여준 새로운 국정 운영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 전반을 고려할 때 법치(法治)가 정치 영역에서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모사건 처리 과정이 영조시대에 활발히 추진된 법제 및 사회경제

49) 프랑스 루이 14세의 사례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푸른역사, 2009) 참고.

개혁의 정책의 의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요컨대, 반대 정치세력의 점진적 숙청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영조 식의 법치, 영조 국정운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闡義昭鑑』.  
『大明律直解』.  
『連坐案』.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 태학사, 2010.

이상배, 『조선후기 정치와 궤서』. 국학자료원, 1999.

이성무·정만조 외,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김백철, 「영조대 國王義理明辯書의 편찬과 의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 서울대 규장각, 2005.

김성윤,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역사와 경계』 43, 2002.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2010.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_\_\_\_\_,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_\_\_\_\_, 「조선시대 政治史 研究의 성과와 과제」. 『朝鮮時代 研究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배혜숙, 「영조 연간의 나주 궤서사건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심재우, 「조선후기 법전 편찬과 국왕의 법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VIII, 2008.

\_\_\_\_\_, 「조선후기 형벌제도의 변화와 국가권력」. 『국사관논총』 102, 2003.

역사학회, 「근대 이행기의 군주제」. 역사학회 하계 심포지엄 발표문, 2010.8.27.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통권 54호, 2001.

이경구,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53, 2004.

이성무, 「조선시대의 왕권」.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원, 1999.

이태진, 「정조 - 유교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 1983.

\_\_\_\_\_,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역사학보』 111, 1986.

조윤선,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패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2009.

\_\_\_\_\_, 「조선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37, 2009.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국 문 요 약

이 글은 『천의소감(闡義昭鑑)』 편찬의 결정적 배경이 된 영조대의 대표적 역모(逆謀)사건인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의 처리과정, 그 처벌의 양상을 통해 법과 정치, 권력의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분석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에게 가해진 처벌이 갖는 의미, 옥사 처리와 관련한 법운영의 특징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을해옥사는 영조대에 발생한 역모 가운데서도 반노론(反老論) 정치집단에 큰 정치적 유혈을 낳은 중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처리의 특징은 한편으로 역모 처단의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론(少論)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정치보복, 초법적인 처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을해옥사는 영조대 탕평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역모 처단 과정에 나타난 영조대 정치문화는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요컨대, 반대 정치세력의 점진적 숙청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영조 식의 법치, 영조 국정운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투고일** 2010. 10. 4.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10.

**주제어(keyword)** 을해옥사(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영조(King Yeongjo), 정치범(political prisoner), 역모(conspiracy of treason),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